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 본문 중 “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”을 “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금전등은 금융상품 유형별로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 다만, 위반행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제1항의 금전등의 산정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1. 예금성 상품 :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
2. 대출성 상품 :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
3. 투자성 상품 :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
4. 보험성 상품 :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

별표2의 제목 중 “제43조 제3항”을 “제43조 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수입등의 산정기준 등)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(이하 “수입등”이라 한다)을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 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<u>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</u>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그 대상 으로 한다. 다만, 제37조제6항 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. < 신 설 >	제43조(수입등의 산정기준 등)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(이하 “수입등”이라 한다)을 산정할 때 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<u>얻은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대상</u> 으로 한다. 다만, 제37조제6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. ② <u>제1항의 금전등은 금융상품</u> <u>유형별로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</u> <u>산정한다. 다만, 위반행위의 내용</u> <u>을 감안하여 제1항의 금전등의</u> <u>산정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</u> <u>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</u> <u>정할 수 있다.</u> 1. <u>예금성 상품 : 예금액 또는 이</u> <u>에 준하는 금액</u> 2. <u>대출성 상품 : 대출액 또는 이</u>

② · ③ (생략)	<u>에 준하는 금액</u> 3. 투자성 상품 : 투자액 또는 이 <u>에 준하는 금액</u> 4. 보험성 상품 :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③ · ④
-------------------	--